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2026-78호

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려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·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0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1. 건　명: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

2. 근　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1	장○희	78.02.16.	충남 서산시 부○○로 19, 1**동 13***호	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	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○ **반환명령액: 12,738,000원** ○ **지급제한일: 2025. 4. 23..**	수취인 불명

4. 공고기간: 2026. 6. 10. ~ 2026. 6. 24.(15일간)

※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5. 불복사항의 고지방법: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 수사관(Tel. 041-620-74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